



# 안세회계법인 · 829-7575

## 세계재경저널 Answer

eAnSe.com ··· 2023/5/2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매출채권 등 대손사유 (법령 §19의2①)

매출채권 등 대손사유(법령 §19의2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상법 5년 → 민법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어음 1년, 수표 6개월)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신고조정 가능) 세무조정에 손금산입
5.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제외) 9.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합계액 기준) 10.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손익계산서 반영